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늘~하나 급여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중복가입 불가 문구 삭제, MMDA 결산일 변경,  
 급여이체 상세기준 추가, 수수료면제 종류에 타행 자동이체 추가, 카드사명 변경,  
 일반통장 전환조항 삭제, 조문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b>『늘~하나 급여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b>	<b>『늘~하나 급여통장』 특약</b>	구행명 삭제
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늘~하나 급여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“ 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 ”과 “ 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</u> ”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	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“늘~하나 급여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“ 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 ”, “ 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</u> ”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	조항명 변경
<b>제 2 조 예금과목</b> (생략)	<b>제 2 조 예금과목</b> (좌동)	구행명 삭제
<b>제 3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, <u>타 수수료면제 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.</u>	<b>제 3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	중복가입 불가 삭제
<b>제 4 조 이자지급</b>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온 익일 (이하 ‘원가일’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 1) 보통예금 및 MMDA: <u>매년6월, 12월의 제3금요일</u> 2) 저축예금: 매년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 ② (생략)	<b>제 4 조 이자지급</b>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온 익일 (이하 ‘원가일’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 1. 보통예금: 매년6월, 12월의 제3금요일 2. 저축예금 및 MMDA: <u>매년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</u> ② (좌동)	MMDA 결산일 변경
<b>제 5 조 이자지급</b> ① 은행은~(중략)~제공합니다.  (필수조건) 이 예금으로 매월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<u>급여 이체</u> 시	<b>제 5 조 이자지급</b> ① (좌동)  (필수조건) 이 예금으로 매월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<u>급여 이체<sup>(※)</sup></u> 시 <u>(※) 급여이체 인정기준(생략, 변경 후 특약 참조)</u>	급여이체 주석 추가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 거래) 1) ~ 3) (생략) <b>4) 납부자 이체</b>	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 거래) 1. ~ 3. (좌동) <b>4.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</b>	타행 자동이

<p>5) (생략)</p> <p>② 은행은~ (중략) ~제공합니다.</p> <p>(추가요건)</p> <p>1) <u>하나SK카드사의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월 3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</u></p> <p>2) (생략)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<u>③ 은행은 제1항의 필수요건 및 제2항의 추가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평가하여 이 예금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, 동 평가결과 위 제1항의 필수요건을 연속하여 총(3)회 이상 미달한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전환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<b>제 6 조 기타</b>  <u>위 제 5 조의 우대서비스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가능하며,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고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 드립니다.</u></p>	<p>5. (좌동)</p> <p>② 은행은~ (중략) ~제공합니다.</p> <p>(추가요건)</p> <p>1. <u>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월 3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<u>③ (삭제)</u></p> <p><u>(삭제)</u></p>	<p>체 추가</p> <p>카드사 명칭 변경</p> <p>전환 조항 삭제</p> <p>조문 삭제 (내용 중복)</p>
---	---	---